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원위원회제도 활성화〉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42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향엽 · 허성무 · 강득구 · 이기현 · 김승원 · 곽상언
김 윤 · 이광희 · 이주희 · 이재강 의원(10인)

2. 발 의 일 : 2026. 1. 5.

3. 회 부 일 : 2026. 1. 6.

※ 의안번호 : 1584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그런데 전원위원회는 중요 현안을 의원 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실제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의 두 차례만 개최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원위원회 개최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원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원위원회의 개최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하고, 전원위원회 내에 안건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전원위원회) ①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u>재적의원 4분의 1 이상</u> 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의2(전원위원회) ① ----- ----- ----- -----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 ----- ----- ----- ----- ----- ----- -----.
<신설>	② 전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

현행	개정안
② ~ ⑤ (생략)	<u>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u>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전원위원회란 위원회에서 의안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전에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를 담당하는 회의체로서, 모든 의원이 참여하여 특정 의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위원회중심주의로 인한 본회의 심의의 형식화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¹⁾

이 제도는 제정 「국회법」에서 도입된 이후, 본회의 심의와 중복되어 의안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비효율성 문제로 제5대국회에서 폐지되었다가(1960.9.26.), 중요 의안에 대한 심사의 충실화를 기하고 의원들의 의안심사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제15대국회에서 다시 도입되었음(2000.2.16.).

전원위원회의 심사대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이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을 전원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됨.

1)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7., pp.305~306

역대 전원위원회 개회 현황을 보면, 제헌 국회에서 2회, 제2대국회에서 4회 개최되었고, 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제16대, 제17대 및 제21대국회에서 각각 1회씩 개최되었음.²⁾

[표-2] 전원위원회 개회 현황(제16대국회 이후)

대 별	개 회 일	안 건
제16대	2003.3.28.~2003.3.29.(2일간)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제17대	2004.12.9.(1일간)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제21대	2023.3.30., 4.10.~4.13.(5일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자료: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2025.3., p.1189

개정안은 전원위원회가 그 도입 취지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도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원위원회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전원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경우,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안건을 심사하려는 제도의 취지,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다시 소위원회 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소위원회 신설로 인한 안건 심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중

2) 전원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었으나 미개회한 사례는 제19대국회 1건, 제20대국회 2건, 제21대국회 6건임.

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